

---

# 2024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공고

---

2024. 03.



## 2024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공고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세종 지역특화소재 활용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2024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내 유망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 1. 사업목적

-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 지역특화소재 :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인물·산업 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
- 지역특화 콘텐츠 분야 육성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 도모

###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1. 20.
- 공고기간 : 2024. 3. 6.(수) ~ 2024. 3. 28.(목)
- 접수기간 : 2024. 3. 14.(목) ~ 2024. 3. 28.(목) 17:00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콘텐츠 기업
  - ※ (참여기업) 역외기업(서울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선택)
  - ※ '4. 신청자격 및 조건' 확인
- 사업내용 :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2개 과제 내외
  - ※ 과제당 1억원~2억원/총사업비 3.3억원 이내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별도 편성 필수

### 3. 지원 내용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영상(독립제작자 대상), 캐릭터, 실감형 콘텐츠(메타버스, AR·VR·MR, 홀로그램 등), 융복합, 출판, 게임, 공연 등
  - ※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 ※ 기획단계(스토리 등)의 기 완성된 콘텐츠의 경우 최종완성을 목표(결과물)로 지원함
  - ※ 콘텐츠 전 장르 가능(제한 없음)
  - ※ 단, 사업비는 평가 시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 필수사항

- 민간자부담(총사업비의 10%)이상 별도 편성 필수
- \* (필수) 민간자부담 :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부담)의 **10%이상 편성 필수(현금)**  
예) 총사업비 100백만원 = 지원금(국고+지방비) 90백만원(90%) + 민간자부담 10백만원(10%)
- \* 단, **대기업 참여시**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민간자부담 총사업비(국고+지방비+민간자부담)의 **20%이상 편성(현금) 및 유통판로 확보서 제출 필수**
- 타지역 동사업 중복 지원 불가(중복지원시 협약포기)

- 개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1. 20.(약7개월)

### 4.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콘텐츠 기업

#### ■ 자격요건

-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설립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일 기준)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예산편성시 **주관기업의 비중이 최소 51% 이상**이어야 함)
- \* (주관기업) 세종 소재 콘텐츠 기업
- \* (참여기업) 역외기업(서울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선택)
- \* 참여기업에 한해 대기업 참가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현금 자부담 매칭 20% 이상, 유통판로확보서 제출 의무)
- 부동산업 등 지원불가
- 비영리기업 지원불가
-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에서 제재사유 발생시 사업 지원 불가

## ■ 신청 자격 제한

- 공고 시작일 기준 세종시에 본사 또는 지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대표를 포함한 3인 이상 기업 / 고용인력 : 공고일 기준 4대보험 등록된 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재)세종테크노파크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 지원사업 및 타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신청일 현재 (재)세종테크노파크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이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조금의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하여는 자, 과제참여인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단,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필수요건
    - **협약종료일까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콘텐츠 완성**
      - ※ 사업기간 내 유통 또는 서비스 개시되어야 함
    - **과제당 2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정규직 또는 계약직)**
      - ※ 고용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퇴사 시 대체 인력 채용을 해야함  
(중간·최종 평가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인력에 대해서만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정)
      - ※ 컨소시엄의 경우 기업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2인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권장
    - 지원금 신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과제참여인력 전원 성평등 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권장사항 : 당해연도(~2024. 12월 말) 콘텐츠 사업화 계약체결 1건 이상

## 5. 사업비 지원 및 편성 요건

- 사업비 지원 요건
  - 지원금은 제안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
  -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됨
- 사업비 지급 :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의 70%는 협약체결 이후 지급
  - (2차) 잔금 3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 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판정될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수행 내용에 따른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 최종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사업 참여 제한
    - ※ 이행(지급)보증보험 발급시 수수료(보증료 혹은 보험료)는 수행기관 부담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 세부내용 '예산편성지침' 참조
  -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 불가함
  - 인건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총 사업비의 70%까지 편성 가능)
  - 이외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총 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 선 집행 필수

## 6. 신청절차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4. 3. 6.(수) ~ 3. 28.(목)
- 접수기간 : 2024. 3. 14.(목) ~ 3. 28.(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3. 28.(목) 17:00까지)
  - ※ 본 공고의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e나라도움 업로드
  - ※ 마감시한 이후 방문 등 신청·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www.boj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① 좌측 상단 [e나라도움 업무시스템 로그인] 버튼 클릭 후, 로그인e나라도움 회원가입
  - ② e나라도움 로그인
  - ③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기관] 사업자-세종테크노파크 지정 후 검색
  - ④ 공모 목록에서 “2024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선택
  - ⑤ 신청 사업 선택 후, 우측 상단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⑥ STEP1 신청기관 등록, STEP2 사업내용 등록, STEP3 신청서 제출 탭 순서로 작성
  - ⑦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 제출] 탭의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접수 완료
    -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를 미리 작성(준비),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해야 함
    - \* 마감당일 많은 과제 접수가 진행될 경우 업로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접수진행 권장함
    - \* 온라인 접수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완료가 안 될 경우, 접수 불가

## 7. 선정평가 및 평가기준

○ 사업추진 절차

구분	추진일정	내용
지원사업 공고	3월 초	○ 지원사업 사업공고(홈페이지 등)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3월	○ 사업 신청서 접수(약 1개월 예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지원과제 선정	4월 초	○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 과제 선정(발표 평가)
↓		
심야조정위원회 개최	4월 중순	○ 선정과제에 대상 평가 의견 반영 내용 검토 및 사업비 심야조정 * 과제 보완 진행
↓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4월 말~5월 초	○ 세종테크노파크-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평가, 현장점검 진행
↓		
사업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8월 중순~말	○ 사업 추진 실적 중간 점검 추진 ○ 사업체 현장 점검 진행
↓		
사업 성과물 점검	11월 말	○ 사업 최종평가 진행
↓		
사업비 정산	12월~1월	○ 사업비 정산 보고

○ 심사일정 및 선정방식 : 적격심사,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구분	추진일정	내용
적격심사(적정성 검토)	3. 28. ~ 4. 1.	○ 제출서류 확인 및 지원요건 부합·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		
선정평가(서면발표)	4. 2. ~ 4. 5. 中 *추후 일정 확정 안내 예정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예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발표평가 통과 ○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 기준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후순위 과제 포함 가능) * 종합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야조정위원회 개최	4. 8. ~ 4. 12. 中	○ 선정과제에 대상 평가 의견 반영 내용 검토 및 사업비 심야조정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 발표자료 제출
  - 적격심사 후 별도 통보(주말제의 발표심사일 2일전 제출)
- 평가위원 구성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선정평가 기준(안)
  - 적격심사(적정성 검토)

구분	심사기준	비고
적정성 검토	○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장 소재지	○ 부적합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음
	○ 공고기준 필수 서류 제출 유무	
	○ 공고기준 신청자격제한 대상 유무	

- 선정평가(서면·발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25점)	○ 추진의지 ○ 참여인력 확보 ○ 전문성	○ 수행책임자의 추진 의지 ○ 참여인력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및 참여율 적정성 ○ 기업 및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 경험 및 제작역량 보유 여부	20																							
	○ 재무건전성	○ 기업신용데이터 <table border="1"> <thead> <tr> <th>①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th> <th>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th> <th>③ 기업신용평가등급</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td> <td>A1, A2+, A2°, A2-, A3+, A3°, A3-</td> <td>①의 AAA, AA+, AA°, AA-, A+, A°, A-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td> <td>5</td> </tr> <tr> <td>BB+, BB°</td> <td>B+</td> <td>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td> <td>4</td> </tr> <tr> <td>BB-</td> <td>B°</td> <td>①의 BB-에 준하는 등급</td> <td>3</td> </tr> <tr> <td>B+, B°, B-</td> <td>B-</td> <td>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td> <td>2</td> </tr> <tr> <td>CCC+ 이하</td> <td>C 이하</td> <td>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td> <td>1</td> </tr> </tbody> </table>	①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A1, A2+, A2°, A2-, A3+, A3°, A3-	①의 AAA, AA+, AA°, AA-, A+, A°, A-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
①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A1, A2+, A2°, A2-, A3+, A3°, A3-	①의 AAA, AA+, AA°, AA-, A+, A°, A-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4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																							
사업비 (20점)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조달계획	○ 사업비 편성의 사업목적 수행 적합성 ○ 자부담금 조달 규모의 적절성 및 조달 계획의 구체성	20																							
과제기획 및 내용 (40점)	○ 과제 이해도 ○ 과제 독창성 ○ 수행가능성 ○ 대중성(사업화가능성)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기한내 완료가능성 ○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40																							
기대성과 (10점)	○ 후속발전가능성 ○ 경제적성과 ○ 지역기여도	○ 상용화 등 발전가능성 ○ 기대되는 매출 규모 및 투자유치 가능성 ○ 지역 대표 콘텐츠로서의 성장가능성	10																							
ESG (5점)	○ 일자리 창출	○ 본 과제의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 0명 0점	3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인증서 제출) * 제출 2점 / 미제출 0점	2																							
합계(100점)			100																							

##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포함 총 16개(1번~15번 필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폴더양식 ZIP “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 업로드</li> <li>※ 압축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 앞 2단어.zip</li> <li>※ (통합버전) 1~15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li> <li>※ (개별버전) 제출폴더양식.zip에 1~16번 각 제출서류별로 구분하여 저장</li> <li>☞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li> <li>☞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음</li> </ul>
----------------------------------------------------------------------------------------------------------------------------------------------------------------------------------------------------------------------------------------------------------------------------------------------------------------------------------------------------------------------------------------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필수	1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한글PDF 파일 둘다 (hwp, pdf) ○ 표지 제외 과제신청서 2페이지 이내 작성 ○ 과제수행계획서 30페이지 이내 작성
	2	수행기관 소개서 (주관, 참여)	한글파일 (hwp) ○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주관기관, 참여기관 양식 다름)
	3	정부지원 수혜실적(최근3년)	
	4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스캔파일 (pdf) ○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기관별 PDF파일로 스캔, 제출 ○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5	공동수행 협약서 및 사업자부담금 협약서	
	6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한글파일 (hwp) ○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 해당시(일반용역비 편성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7	위탁사업 계획서	
	8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지정양식) ○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전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
		참여인력 이력 및 과제참여 현황	
		신규인력 채용계획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스캔, 제출 ○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 공고일 기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최근 2년간(22년~23년) 표준재무제표에 대해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 설립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미제출 ※ 2023년 재무제표는 기업상황에 따라 가결산재무제표 제출 가능하나 회계기관(사) 인증 필수 ○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 파일로 제출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
	10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재지 확인용)	
	12	4대보험 납입증명서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4	표준재무제표		
1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선택	16	기타 증빙 서류	

※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9.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운영 관리 지침」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출로 인정되지 않음
-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재단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및 선정 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취소됨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재)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계좌)을 개설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 재단 및 전담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홍보·마케팅 목적 및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0. 문의처

- 사업문의: (재)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디지털콘텐츠산업팀  
이희진 전임연구원 (044-850-3842 / jin56@sjtp.or.kr)
- 홈페이지 : [www.sjtp.or.kr](http://www.sjtp.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참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